

제428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7일(수)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5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7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3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30)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004)

**상정된 안건**

- |   |   |
|---|---|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0) .....     | 2 |
|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            | 2 |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52) ..... | 2 |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70) ..... | 2 |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32) ..... | 2 |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30) ..... | 2 |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004) ..... | 2 |

(15시44분 개의)

○**소위원장 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시에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켜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15시45분)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언론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협조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보고에 앞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이훈기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오늘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제가 비슷한 법안을 25일 날, 월요일 날 발의했어요. 제가 좀 빨리 발의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다 늦게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일부는 겹치기도 하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 법안도 절차를 밟아서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발표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보시면 경과와 주요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최민희 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무에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하고 그리고 심의의결 사항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가 다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통위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고 그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되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합니다.

두 번째 쪽 보시겠습니다.

김현 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해서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마찬가지로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OTT 콘텐츠 등 뉴미디어 정보에 대해서 심의 기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해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헌법, 법률 위반 시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게 특징적입니다.

3쪽, 검토보고 요지 부분의 연혁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보시겠습니다.

방송 또는 시청각미디어 분야 소관 일원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안과 김현 의원안은 기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등을 포함하고 또 이런 거를 다 방통위 또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안은 방통위에다가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에 관한 사무를 통합해서 방송·통신과 관련된 규제·진흥을 다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OTT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 의원안은 기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포함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시청각미디어와 관련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아래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10쪽 하단입니다.

방송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렇게 포괄하는 통합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안착과 효과

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일종의 후속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보시면 현재 법률안은 조직 설치하고 대략적인 소관 사무만 규정할 뿐이지 실체적인 규제와 진흥 등의 사항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방송법이라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방송 관련 법률 또는 소관 범위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까지 규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관련 법률 관계까지 재정립하는 일종의 통합 방송법이든 시청각미디어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허가 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부칙 등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조직법 등에서 규정하는 부처별 소관 사항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총괄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최민희 의원안과 김현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김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일원화하는 제정안의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현재 상임위원회 1명인 상황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낼 수 없어서 부칙 4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분야 소관 조정에 대해서 OTT 확산 등을 감안하면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충분하게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만 통신 분야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방통위 사무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기존의 소관 사무와 충돌·중복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운영원칙, 소관 사무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는 김현 의원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해서 방송과는 제도적 기반이 상이한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각미디어를 방송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방심위는 9인의 심의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촉한 다음에 또 상임위원 3명을 호선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심의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임명 절차가 일반적인 절차와 좀 다르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를 민간기구로 만들었던 근본 취지 등을 감안하면 위헌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김현 의원안과 관련해서 OTT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진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또 시청각미디어 개념이 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업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또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통상규범 위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해외의 방송·통신 관련 기구 현황을 보시면 해외의 경우는 미국·일본은 방송·통신 정책하고 규제 기능을 단일기구에서 담당하고 있고 영국·캐나다·호주·프랑스는 정책과 규제 기능을 분리해서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각각 분담하는 등 국가마다 역사적·문화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쪽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16쪽 보시겠습니다.

제정안인 김현 의원안의 구성체계를 보시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체계에 근거해서 목적, 운영원칙 등을 변경했습니다.

17쪽 보시면, 소관 사무인 11조에 방송진흥 업무와 OTT 진흥·규제 업무를 명시하고 심의 의결 사항인 12조 이에 맞게 구체화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관련해서는 개의정족수를 포함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심의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무직으로 하고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김현 의원안 제정안의 구성체계입니다.

조문별로 진행을 할까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총론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현** 말씀하시기 전에 일부러 참고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에 있었던 인권위원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 부결 결과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회의 이후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소위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공지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직 대입니다.

유료방송 업무를 일원화하거나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함하는 정책을 일원화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상임위원이 1명인 상황에서 공식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부칙에 포함된 임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2차관입니다.

현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방송통신을 둘러싼 거버넌스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미디어 시장이 당면한 현실과 앞으로의 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기정통부는 부처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신 분야와 관련돼서는 진흥과 사전 규제는 저희 과기정통부가 그리고 사후 규제, 이용자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지금 계속 부처 간의 업무 분장이 잘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돼서는 현재 부처 간 소관 사무의 분장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OTT 문제는 최민희 의원님 안하고 김현 의원님 안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방통위, 3개 부처가 관련된 부처의 전문성과 입장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OTT가 지금 변화하는 진화의 방향이나 속도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숙고와 토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의한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통위를 장관급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로 놔두고 거기서 약간의 기능을 떼어 내고—제가 발의한 법안은—콘텐츠 관련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문화부의 기능을 하나에 묶어서 독임제 부처를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OTT 관련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저도 여러 번, 오랫동안 언론계에 있었고 방통위 출입기자도 했고 제가 방통위를 한참 지켜봤는데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홍 측면, 그리고 제가 방통위의 여러분들을 볼 때 편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방통위원회에서 콘텐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뭘 하겠다는 분을 제가 솔직히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럴 만한 방통위의 역량이 저는 지금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3개 부처를 하나로 묶은 독임제에서 K-콘텐츠의 중심인 우리 방송영상 콘텐츠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기구에서 국가적으로 새롭게 힘을 갖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김현 의원님 또 최민희 의원님 낸 법안하고, 제가 법안을 늦게 내서 정말 죄송한데 같이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기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얘기하세요.

○**노종면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 위원이 둘 남았나요, 한 분 남았나?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이 있을 수 있나요? 여기 12페이지, 2명이서도 위원회의 입장을 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사무처에서 입장을 준 건지 이게 좀 표기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 부서 안 왔나요?

의견 주십시오.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데……」 하는 이 있음)

지금 질문에 답할 사람이 와 있지요?

(「예」 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해 주세요.

한민수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한민수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게 법률 조항별로 설명이 있나요, 순서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지금 총괄적인 말씀을 나누시고요. 조문별로는 다음에 이제……

○**노종면 위원** 각론으로는 조금 이따가 들어가나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부처 의견에 대해서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고요. 이해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 이해민입니다.

과기정통부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요점만 좀 받아서 적어 봤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론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통신 부분이에요. 현재 진홍과 사전 규제 부분은 과기정통부 그리고 사후 규제 부분은 방통위 이렇게 업무 분장이 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말씀은 못하신 것 같은데 우려 사항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OTT 같은 경우는 부처, 사실 여기 문체부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이 부분에서는 더 세게 숙고와 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각론으로 들어가 봄아지 알겠지만 총론 면에서 규제와 진홍을 한 곳에서 다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 얼마큼 유효할까라는 질문이 생기기는 하고요, 동시에 지금 큰 변화긴 한데.

저는 사실 이훈기 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공발 요청하면서 적어 주신 부분은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 숙고, 토의 필요 이런 게 공론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조금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만 총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OTT는 문체부까지 관련이 좀 많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와의 조율이 빠져 있는 것은 우려 사항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방통위 입장이 특히 김현 의원님 안,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보면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함하는 정책 일원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한다 그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한민수 위원**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것이—지금 상임위원이 한 명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부칙 4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 부칙 4조라는 게 공무원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고 정무직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것을 왜 반대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거기 팔호에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방통위원장의 입장입니다.

○**한민수 위원**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아니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민수 위원** 한 분인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반대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한민수 위원 그런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에 만들어지고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해서 된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는 한계에 봉착됐다고 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전임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2명으로 온갖 방송장악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 법원에서도 다 제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도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대대적인, 그것도 다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차관님도 인정하는 것처럼 OTT 환경이랄지 그것은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잖아요. 기구 재편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올라와 있는 시청각미디어, 김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추가로 더 할까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제정이냐 개정이냐, 지금 법안 하나는 제정법으로 올라와 있고 하나는 개정법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두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공통점은 현재의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바꾸고 또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법으로 해서 이 조직이 다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체부 등과의 조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OTT 관련 업무는 이번 논의 단계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다 아시다시피 최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된 방송 관련 법들, 소위 말하는 방송 3법 이것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이내에 KBS·MBC·EBS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추천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의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절차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로 일컬어지는 방통위 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방송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대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장기 과제로 문제인 정부 아래로 줄곧 이어져 왔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중요한 부분에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IPTV 등의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이관해서 조정하는 정도로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나머지 과제는 장기 과제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OTT를 포괄하는 의미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기구의 새로운 명칭, 이 제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도로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관되는 업무의 양이 결코 적지 않고 또 이에 따라서 조정될 인력 구조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 5인 상임위원의 숫자가 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제정법은 지금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서 일정 정도 증가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만 최민희 위원장님 안에 따르면 9명까지 확장하는 건데 그 중간 단계에서 적정한 인원은 불가능한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7인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요. 7인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 숫자는 오히려 지금보다 좀 줄여서 한 3명 정

도로 하고 나머지 4명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방심위원 자격 기준에 변호사가 들어가 있지요?

○**소위원장 김현** 방통위……

○**노종면 위원** 아, 방통위원 자격 기준에……

그런데 여기 어느 규정인지 제가 계속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우리 사회가 습관적으로, 법조인을 예우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과하게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당 조 1호에 보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미 포괄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항목으로 그 판사나 검사 이력을 가진 분들을 별도 호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혹시 더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훈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발의한 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발의한 안이 그냥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3개 안 중의 하나가 제가 발의한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함께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 거고요. 법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훈기 위원**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의견을 낸 것으로 속기록에 남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없는데 논의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게 법안소위입니다. 이게 전체회의나 아니면 저희 민주당의 정책조정회의라든가 그러면 법안의 성격과 내용을 얘기하면서 의견을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훈기 위원** 아니, 의견하고……

○**소위원장 김현**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없는 법안을 가지고 의논하자고 얘기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더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여기 낸 2개 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요.

○**소위원장 김현** 이훈기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법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훈기 위원** 아니, 잠깐만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법안을, 회부되어 심의 중인 법안에 대해서 같은 법안이 있으면……

○**소위원장 김현** 충분히 얘기하셨다니까요.

○이훈기 위원 같이 회부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 법안을 갖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 하시는 거니까요.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확히……

○소위원장 김현 아니, 법안이 없는데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현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혹시 이 법안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이훈기 위원 여기 법안을 보면 아까 인원수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어요. 김현 의원님 안은 5명이고 최민희 의원님 안은 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과 비상임의 비율을, 지금은 5명이 다 상임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6명을 비상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추천을 어디서 하냐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주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 방송 3법이 시행이 되니까 이게 시행이 되려면 사실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인정하고. 그런데 그러면 일단 그것 때문에 원 포인트로 지금 법을 통과시키고 좀 포괄적이고 아까 얘기한 여러 부처 간에 서로 조정해야 되는 것은 추후에 입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혼란스럽거든요.

○소위원장 김현 지금 정부에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저한테 묻는 건가요?

○이훈기 위원 예.

○소위원장 김현 제가 답변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해민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이해민 위원 예.

○노종면 위원 저 다른 의견 있어서……

○소위원장 김현 예, 얘기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될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될지 이제 법이 통과될 경우에 어쨌든 합의제 위원회 구조가 유지되면 거기에 위원을 구성하는데 추천 주체에 대한 문제까지 법에 다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야가 어떻게 추천할지 지금 이훈기 위원님처럼 새로운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갈지, 저도 일부 토론회에서 한 번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방통위원—그냥 통칭 방통위원이라고 하겠습니다—방통위원도 KBS나 MBC 이사회 구성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제를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이훈기 위원님이 그런 취지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주체의 문제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기구라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고 임의로 막 바꾸고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방송법 개정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도록 하

자라는 그런 제안은 저는 중복적인 제도 설계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송법 통과로 방통위가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통위는 원래 그 기구의 성격대로, 정부 기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추천·임명 권한을 갖고 있던 국회와 대통령, 선출된 권력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아까 전에 노종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부 조직이 바뀌는 거라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부 측 의견이 꽤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OTT 부분은 문제부까지 관련 있으니까 길게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 의견에는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신 쪽이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통신 쪽 또한 그게 해당 정부 부처의 의견이라고 하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12페이지에 인기협 거를 잠깐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통상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뒤 13페이지에 보면 USTR 리포트 무역장벽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장 가서 비판세 관련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우리는 플랫폼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관점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서는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통상 문제로 그것을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가지고 인기협의 의견 또한 우리가 강론을 하면서, 만약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진행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오늘 어차피 지금 야당 위원이 참석을 못 했고요. 그러면 야당 위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조문을 보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축조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현 해야 되니까 오늘 축조심사를 안 하고 그냥 하고……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오늘 이렇게 총괄적인 토론하시고 축조심사는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다음에 3항부터 7항까지도 지금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계적절하지는 않은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통상의 예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렇지요, 통상? 통상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노종면 위원 또 안 들어오면 그때도 논의를 못 합니까?

○소위원장 김현 아니, 두 번째는 그냥 논의해야지요.

○한민수 위원 계속 안 들어온답니까?

○노종면 위원 계속 안 들어오면……

○소위원장 김현 아니아니, 오늘은 아까……

○노종면 위원 아, 오늘만? 오늘만이요?

○**소위원장 김현** 제가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지요.

○**한민수 위원** 인권위원회.

○**소위원장 김현** 오늘은 보이콧이에요. 아까 인권위원 표결 결과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오늘은 보이콧한 거고 그다음에는……

다른 분들은 안 들어오더라도 최형두 위원님은 오시는 거지요? 최형두 의원실 지금 계시지요? 혹시 야당 의원실의 어느 보좌진들이 계시지요, 전문위원님 말고. 마치 민주당인 것처럼 짹 앉아 계셔.

아까 어디 의원실이 있었는데, 없나요? 야당……

○**한민수 위원** 야당 위원이 한 분 계시기는 해요.

○**이해민 위원** 저, 야당……

○**소위원장 김현** 아니……

○**국민의힘당전문위원 전인성** 오늘 오시냐는 그런 말씀이세요?

○**소위원장 김현** 오늘 안 오신다 그랬어요.

○**국민의힘당전문위원 전인성** 예, 오늘은 문자 보낸 것으로……

○**소위원장 김현** 최형두 간사님 오늘 안 오시는데, 제가 혹시 야당 의원실 보좌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시는 거지요?

○**국민의힘당전문위원 전인성** 예.

○**소위원장 김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한민수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한민수 위원** 이 법안……

○**소위원장 김현** 잠깐만, 미안합니다.

방심위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기조실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기조실장님, 아까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금 방심위원이 2명밖에 안 계시는데 여기 방심위 의견이 방심위 의견이냐, 방심위원 2명의 의견이냐, 아니면 사무처 의견이냐는 것을 확인하고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쪽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제출한 의견은 아니고요. 사무총장 보고 후에 제출한 의견이기 때문에 사무처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사무처 의견을 어떻게 냅니까? 사무처가 그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지금 현재……

○**소위원장 김현** 아니, 낼 수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사무처하고 상임위원들하고 다른 데 어떻게 사무처 의견이 방심위 의견으로 나옵니까? 지난번에 이현주 사무총장이 방심위원 얘기를 물어보니까 사무처는 전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안 맞지요, 지금 이 보고가? 없는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견

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러니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어쨌든 총장의 허락을 받고 총장이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무처……

○소위원장 김현 총장은 방심위원 의견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방심위가 없는데, 위원회가 없는데 총장이 의견을 내는 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정부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방심위 사무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방심위로 본인들이 이 퀸 해 가지고 합니까? 이건 기망입니다. 기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예.

○소위원장 김현 방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원장 혼자인데, 심의 의결해서 의견을 내야지요. 그렇잖아요? 국회에 의견을 내는데 사무처 의견은 아닌 거잖아요. 위원장의 의견이, 1인 의견이 어딨어요.

○노종면 위원 문제 제기하니까 말씀을 좀……

법안심사소위 심사자료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기술을 수정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위원장이 혼자고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지요.

7월 1일 전까지는 가능해요, 김태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제 법안은 7월 1일 이후에 나온 법인데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이 나올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심위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방통위도 위임전결 규정이라든가 등에 관해서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등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를……

○소위원장 김현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여야의 논의 진행에 따라서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훌륭한 표현을 씁니다, 세세하게 입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왜냐하면 사무처 의견과 위원장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도 보면 사무처의 의견은,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본인의 거취를 정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사무처는 정부를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생기는데 그 충돌되는 것을 마치 전체 입장인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현재 1인 구조 상황에서 이 중요한 사회적·정치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데 1인이 낼 수 없어요, 이것은. 그렇지요? 사무처장직무대리님?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는 중요한 법안이라 어떤 형태로든 방통위원장하고 사무처랑 협의된 내용을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뭐냐 하면 사무처는 단일안으로 낼 때도 있고요, 쟁점 있는 경우는 1안·2안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럴 경우는 이런 의견이고 이

럴 경우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의견을 내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합의제 기구에서 2017년도에 2인 구조에 있을 때, 3인 구조에 있을 때, 1인 구조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는 법률 자문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정치적인 중요한 의제에 관련해서는 합의제 정신을 존중해서 5인이 있을 때 의결한다, 의견을 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그 법률 검토를 기초로 할 때는 인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을 살린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언제 작성해서 우리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과방위 행정실에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변화된 지형과 조건에 맞추어서 의견을 신중하게 제출해 주셔야 돼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지금……

○한민수 위원 저도 의견 낼까요?

○소위원장 김현 예.

○한민수 위원 일전에 김현 의원님 안을 공동발의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때 이 법의 취지나 또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이 이름이, 법안 이름도 그렇고 위원회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줍아 보인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할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때 같이 위원회 명칭을 논의하고 우리 법안명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일단은 시간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 감안해서 지금 노종면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이 낸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번 공청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소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을 좀 정리해서 저희가 이 의견, 그러니까 지금 시청각이라는 표현이 OTT를 어떻게 규율할 거냐를 놓고 부처 간에 상당 의견이 존재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의견이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법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라는 원칙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제정법에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기존의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7명을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조 개편하는 것. 그리고 OTT 동영상 서비스 기능은 저희가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유료방송 사업 중에 저희가 종합편성채널하고 그다음에 IPTV, 하나가…… 3개인가요? 잠깐만요, 법을 볼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케이블방송하고 위성방송……

○소위원장 김현 케이블, 위성방송하고 종합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홈쇼핑……

○소위원장 김현 홈쇼핑, 3개만 방송사업자로 들어오는 거고 음악하고 전광판은 포함 안시키는 것으로……

지금 제 법에는 전광판하고 음악하고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 이해민 위원** 통신, 통신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통신은 그대로. 그대로 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예.

○**소위원장 김현** 해킹 분야를 지난번 SK텔레콤 때 있었던 그 기능을 통신 쪽으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임명 등)에 관한 조항인데요. 그게 5조 2호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 부분은 1호의 15년으로 다 포함이 가능하다, 굳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분리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호로 다 포함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9월 10일 이내에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소위도 바로 이어서 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테니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

그렇게 되면 문체부는 의견이 없는 거지요? OTT, 영화, 음악, 전광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뺀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문체부는 특별히 의견은 없는 거고.

과기부도 특별히 의견이 없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유료방송 사업자 3개……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온라인 동영상도 관련됐는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아니, 그것은 좀 미루시는 게……

○**소위원장 김현** 그리고 방심위는 위원장만 국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정무직공무원 2명은 민간 신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근이지요? 그렇게 돼도 3명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서정배** 3명이……

○**소위원장 김현** 상근은 그대로 가는 거고. 6명, 그러니까 3·6·9지요. 그런데 국가직 공무원 1명, 인사청문회 대상, 탄핵의 대상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논란이, 방심위에서 걱정하는 겸열기구다 내지는 이런 논란은 최소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십시오.

3명에 대한 정무직 전환이 아니라 국가 정무직……

- 한민수 위원** 위원장만.

○**소위원장 김현** 위원장만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다 정리에 해당하는……

혹시 하실 말씀, 속기록에 남기실……

○**이정현 위원** 방송통신위원회를 기존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장악 또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선봉에 섰던 것들을 따져 보면 근본적으로 구조 개편 또 거버넌스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간사님께서 또 여기 김현 소위원장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시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셔서 만들어 주신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또 다른 정책들이나 안이 있다고 한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훈기 위원님께서도 조금 늦었지만 새로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기회를 얻었으니까 저희가 이훈기 위원님의 법안도 함께 분석하고 또 검토해 보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중요한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아직 한 분은 발의가 안 돼 가지고요, 상정이 안 돼서……

○이정현 위원 아, 그랬나요?

○소위원장 김현 더 하실 얘기 없으시지요?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정통부2차관,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 ○출석 위원(6인)

김 현 노종면 이정현 이해민 이훈기 한민수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이재윤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제명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서정배